



세계의 언론피해구제기구를 가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시찰보고서

우리 위원회는 해외 언론피해구제제도 운영현황 파악과 사례연구를 위해 아일랜드와 노르웨이 언론피해구제기구를 방문했다.

이번 해외시찰은 권성 위원장과 함께 장원상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본부장, 최명진 제도연구팀 직원이 수행했으며, 방문기간은 7월 8일부터 16일까지였다.

이번 시찰의 목적은 최근 치열한 논의 끝에 언론피해구제제도 운영의 첫 걸음을 떼게 된 아일랜드의 사례와 아직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노르웨이의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돌아봄으로써 개정 중재법에 따른 제도 운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위원회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시찰단은 아일랜드 언론평의회와 노르웨이 언론불만처리위원회를 방문했다.

‘운영 2년차 맞은 아일랜드 언론옴부즈맨, 제도 정착 위해 순항 중’



1. 아일랜드 신문평의회 및 언론옴부즈맨

(Press Council of Ireland & Office of the Press Ombudsman)

가. 조직 및 구성

아일랜드 언론옴부즈맨은 2008년 1월 처음 설립되어 운영에 들어갔다. 아일랜드는 언론피해구제 기구의 설립을 위해 2004년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으며(당시 법무장관이 전문가 그룹에 의뢰한 정부 주도의 언론규제 제도 연구 보고서가 나온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자율규제 기구 설립 논의가 촉발되었다고 한다), 약 4년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아일랜드는 2007년 7월 신문평의회(Press Council of Ireland)를 먼저 설립하고, 그 소속 기구로서 언론옴부즈맨을 출범시켰다.

아일랜드 언론산업계는 언론피해구제 기구 설립을 위한 준비기구로서 우선 언론사 운영자, 편집인, 잡지 출판인, 기자노동조합 등의 합의를 통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언론자유에 대한 책임으로써 언론보도의 정확성, 공정성, 사생활 존중 등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게 될 기구의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언론피해구제 기구 현황 및 자료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스웨덴의 언론평의회와 언론옴부즈맨 제도를 향후 설립할 위원회의 모델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기구 설립에 나서게 되었다.



권성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아일랜드 신문평의회를 방문, Thomas N Mitchell 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양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해 간담을 나누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신문평의회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독립성과 투명성으로 보고, 언론산업계에서 독립적 인사들로 평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다시 임시 조직인 4인의 임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임명위원회 위원 공모 광고를 내고, 이를 통해 위원을 선정, 활동에 들어가도록 했다.

임명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7명의 신문평의회 위원(위원장 포함)을 선정하였으며, 여기에 신문평의회 결정의 시각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언론계 인사 6명이 포함되어 신문평의회 초대 위원 13인이 첫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언론계 인사는 신문협회가 추천한 3인, 지역신문 및 인쇄협회가 추천한 1인, 정기간행물 발행인협회가 추천한 1인, 기자노동조합이 추천한 1인으로 구성된다. 신문평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나. 역할 및 위상

아일랜드 신문평의회와 언론옴부즈맨의 언론피해 구제 관련 업무는 신문과 정기간행물 등 인쇄매체를 대상으로 한다.

언론옴부즈맨(The Office of the Press Ombudsman)은 접수된 불만 중 조사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 신문

평의회에 그 조사를 의뢰하지만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 활동을 벌일 수도 있다.

언론옴부즈맨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문평의회가 재심을 맡아 진행하게 되며, 신문평의회 재심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나 불만 신청인이 재심의 결과에도 불복하고 법률적인 절차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평의회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중이다.¹⁾

다. 실천요강

아일랜드 신문평의회는 실천요강은 10개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Pinciple 1	진실과 정확성
Pinciple 2	사실과 의견의 구별
Pinciple 3	공정성과 정직성
Pinciple 4	권리의 존중
Pinciple 5	사생활
Pinciple 6	취재원 보호
Pinciple 7	법정 보도
Pinciple 8	증오 유발
Pinciple 9	어린이
Pinciple 10	언론옴부즈맨 결정의 게재

1) Thomas N Mitchell 위원장은 언론옴부즈맨이나 평의회 결과에 불복하고, 다시 법률적으로 해결하려는 언론사는 결국 자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자주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조태용 아일랜드 대사, 권성 위원장, Thomas N Mitchell 아일랜드 신문평의회 의장

라. 활동 및 결정

신청인은 신청서에 자신과 관련된 기사가 실천요강 중 어떤 조항을 위반하였는지 정확히 지목하여야 하며, 불만 대상기사는 보도된 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불만신청인은 불만을 신청한 이후 우선 해당 언론사 편집인에게 자신의 불만 제기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였거나 응답에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본격적인 심의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또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관(Case Officer)이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의 조정을 유도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언론옴부즈맨의 최종결정을 위한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홈페이지 상에도 공개된다.

실질적 피해구제(조정 또는 결정)가 되는 사건의 4분의 1 정도는 조정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해결된 사건은 특별한 결정문을 쓰지 않고 종결된다.

언론옴부즈맨 활동 첫 해인 2008년 접수된 불만건수는 327건이며 25건의 재심 신청이 있었다. 재심 신청 중 14건은 불만신청인이, 11건은 해당 언론사가 신청했으며, 이중 20건은 재심 신청이 기각되었고 나머지 5건 중 3건은 언론옴부즈맨의 처음 결정이 그대로 수용되었고, 1건은 부분적으로

접수된 사건은 조사관이 우선 당사자 간의 조정을 유도, 조정되지 않은 사건에 한하여 언론옴부즈맨의 최종결정 절차로 이관

아일랜드 언론옴부즈맨 2008년 사건 처리 현황

(2008년 12월 31일 기준)

	분 류	건 수
계류중	언론사 우선 협의 중	28
	조정 중	12
	결정문 작성 중	1
종 결	기 각	26
	조정성립	12
	취 하	11
	소송진행으로 결정 유보	6
	결 정	35
	언론평의회 이첩	2
	2008년 이전 기사	37
각 하	당사자 아님	17
	다른 규제 기관 관련	13
	기간 초과	9
	기 타	5

결과가 반복되었으며, 언론옴부즈맨의 결정이 완전히 반복된 사례는 1건이었다.

마. 남겨진 과제

아일랜드 신문평의회와 언론옴부즈맨은 활동 첫 해를 전반적으로 잘 마무리했다고 평가받지만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재심 신청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 도입의 목적인 언론관련 불만의 신속한 처리 및 피해회복의 효율성을 충분히 실현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현재 신문평의회가 재심을 받아들이는 사유는 세 가지로 첫째, 언론옴부즈맨 결정 이후 새로운 정보의 발견, 둘째, 언론옴부즈맨 결정에 절차상 실수가 있는 경우, 셋째, 실천요강의 해석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신문평의회는 신청인이 결과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유연하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한다.

아일랜드 신문평의회와 언론옴부즈맨은 신문평의회 가입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언론불만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신문사 및 출판사 대부분이 언론평의회 내부 조직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모든 신문사, 출판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언론보도 불만 사항을 신문평의회 및 언론옴부즈맨 제도로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모든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하여 언론불만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야 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신문평의회와 역할 강화를 담고 있는 명예 훼손 법안의 의회 통과가 계속 유예되고 있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한다. 새로운 법안에는 신문평의회 결정의 법적 인정 문제, 모든 언론사 및 출판사를 신문평의회 회원으로 포섭하는 유인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르웨이 언론협회 내년 100주년 맞아 ... 언론불만처리제도는 모범 사례로 평가



2. 노르웨이 언론불만처리위원회 (Norwegian Press Complaints Commission)

가. 조직 및 구성

노르웨이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언론의 윤리 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고 독려하기 위해 1929년 노르웨이 언론협회(Norwegian Press Association)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언론협회

의 하나의 부속 기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언론협회를 대표하는 기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²⁾

언론불만처리위원회의 위원은 총 7인이며, 언론인 4인(편집인 2인, 기자 2인), 일반인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선출은 편집인협회와 기자협회에서 2인씩 각각 추천하고,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중 사무총장이 추천한 3인을 언론협회가 최종 임명한다. 위원 3인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언론협회 사무총장은 언론협회 이사회에서 임명된다.

2) 언론불만위원회 Per Edgar Kokkvold 사무총장은 “조직 구조로 볼 때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언론협회의 한 기구이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언론협회를 대표하고 있으며, 가장 잘 알려진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노르웨이 언론불만처리위원회를 방문한 시찰단.
Kokkvold 사무총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현직 언론인과 비언론인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공정한 사건처리를 해왔음을 강조했다.

언론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은 언론인 4인, 비언론인 3인으로 구성. 언론인은 현직에서 활동 중인 인사들이며, 비언론인은 신학자, 교수 등이 주로 맡아

특이한 점은 언론불만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언론인 4인 모두가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라는 점이다. 사무총장이 추천하는 비언론인 위원으로는 신학자, 교수 등이 주로 임명되고 있다.³⁾ 위원들은 모두 비상근 명예직으로 활동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에는 제한이 없다.⁴⁾ 7인의 위원 중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언론계에서 위원장이 나올 경우 비언론계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반대로 비언론계에서 위원장이 나올 경우는 언론계에서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

언론협회는 1910년에 설립되어 내년이면 100주년을 맞게 된다.

협회는 미디어 소유주, 편집인, 기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언론의 윤리적, 직업적 기준을 감독하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와 자유로운 공적 정보에의 접근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론협회와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전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된다.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언론산업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일하기는 하지만 자율 규제 기관으로서 편집인과 기자들에 의해 주로 운영되며, 사무처에서 일하는 직원의 5분의 4 정도가 언론산업계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나. 역할 및 위상

노르웨이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법정기구가 아닌 자율적 규제 기관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인쇄매체, 인터넷 매체 등 모든 종류의 미디어 관련 불만 사항을 다루고 있다.

노르웨이에는 방송관련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1945년 설립되어 활동했으나(Broadcasting Complaints Commission, 정부가 위원을 임명하는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가졌었다고 한다) 기능적 약화로 인해 1990년대에 폐지되고, 1994년부터 언론불만처리위원회가 방송관련 불만 사건까지 맡아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노르웨이에서는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정부기구를 설립하자는 논의

3) Kokkvold 사무총장은 현직 언론인이 언론불만처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결론이 언론 쪽에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는 질문에 “형식상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운영 경험으로 볼 때 언론인과 비언론인의 의견차 보다는 남성과 여성 위원들의 의견차가 주를 이루었다”며 “다른 배경에 의한 차이에 비해 언론인, 비언론인의 입장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Kokkvold 사무총장은 이 부분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공정성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4) 평균적으로 6년 정도 활동을 한다고 한다.

가 두 차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자율기구인 언론불만처리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 윤리강령

노르웨이 언론의 윤리강령은 1936년에 처음 마련되었다. 윤리강령은 언론이 국가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궁극적으로 민주국가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기본 바탕에서 언론이 지켜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언론의 권리에 관한 조항도 담고 있다. 윤리강령은 언론협회 이사회에서 채택·수정되며, 윤리강령은 모든 미디어와 언론인들에게 적용된다. 그동안 윤리강령은 사회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아홉 차례 수정되었고, 대다수의 언론사들은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윤리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라. 활동 및 결정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접수 사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해당 사안의 위반 정도에 따라 ‘윤리강령 위반’, ‘주의’, ‘해당 사항 없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린다. 위원회는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언론사가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위치 및 시간에 신속하게 결정 내용을 게재 또는 보도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벌금 또는 손해배상을 명하지는 않는다.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자율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18년간 언론사가 위원회의 중국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단 11건 밖에 없을 정도로 위원회 결정의 권위는 존중받고 있다.

2008년 언론불만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277건이었다. 접수된 사건 중 147건은 간결하게 기각·합의 등으로 처리가 되었고, 130여 건에 대해서는 온전한 절차에 의한 결정이 내려졌으며, 결정 사건 중 60건 정도가 신청인의 불만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언론사에 사과명령 등이 내려졌다. 불만신청은 언론보도 등이 있을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 요청은 양당사자 모두가 할

노르웨이 언론불만처리위원회 연도별 사건 처리 현황

분류 \ 연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처리건수	186	165	184	158	133	188	231	222	216	188	179	261	261	247	294	277
심의결정안수	76	91	92	83	77	110	127	132	134	123	113	155	146	134	165	130
강령 위반 결정	45	45	34	39	33	40	51	52	48	41	55	64	48	49	75	57
부주의 결정	6	5	7	8	3	5	13	7	7	10	7	7	16	6	6	3
기각	44	42	51	36	41	66	63	72	79	72	51	84	82	79	84	70
간결 처리 5)	43	22	15	15	3	17	20	23	31	21	29	41	53	56	66	71
합의 · 취하	19	19	37	30	38	43	42	34	30	31	24	36	32	35	40	49
각하	40	32	40	30	15	18	42	33	21	12	13	29	30	22	23	27

5) 그간의 심의 전례 등에 의거해 사무처에서 위반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 7인의 위원 중 누구라도 반대를 할 경우 다시 위원들의 전체 심의를 거치게 된다.

수 있다. 그러나 재심에서 1심의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심리는 일 년에 11회 정도가 열리고 있으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에는 불만신청인과 언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심의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서면 심의로 진행된다.

마. 인격권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우리 시찰단 일행에게 자국의 언론피해구제 제도와 언론 현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준 Kokkvold 사무총장은 노르웨이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노르웨이는 공적 사안에 대한 알권리를 매우 강조하고 있지만 개인이 가지는 프라이버시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것 또한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 예로서 노르웨이 언론은 국회의원의 성 관련 스캔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국회의원 자신이 내걸었던 선거 공약과 배치되는 것만 아니라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초상권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경향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는 최근 유럽의회가 개인권에 대한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Kokkvold 사무총장은 개인의 인격권이 항상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때로는 이것이 알권리와 충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그때마다 사회적 이익을 위한 판단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서비스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노르웨이에서는 그 사실을 공표한 모든 매체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언론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제1원칙 - 진실과 정확성

- 1.1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항상 진실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1.2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왜곡된 기사 또는 사진이 게재되었을 경우, 즉시 정정되어야 한다.
- 1.3 필요할 경우 기사의 정정, 사과, 해명 내지 설명, 답변도 즉시, 적절하게 게재되어야 한다.

제2원칙 - 사실과 의견의 구분

- 2.1 추측, 루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

Principle 1 - Truth and Accuracy

- 1.1 In reporting news and information, newspapers and periodicals shall strive at all times for truth and accuracy.
- 1.2 When a significant inaccuracy, misleading statement or distorted report or picture has been published, it shall be corrected promptly and with due prominence.
- 1.3 When appropriate, a retraction, apology, clarification, explanation or response shall be published promptly and with due prominence.

Principle 2 - Distinguishing Fact and Comment

- 2.1 Comment, conjecture, rumour and unconfirmed reports shall not

be reported as if they were fact, but newspapers and periodicals are entitled to advocate strongly their own views on topics.

2.2 Readers are entitled to expect that the content of a publication reflects the best judgement of editors and writers and has not been inappropriately influenced by undisclosed interests. Where relevant, any significant financial interest of an organisation should be disclosed. Writers should disclose significant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to their editor.

Principle 3 - Fairness and Honesty

3.1 Newspapers and periodicals shall strive at all times for fairness and honesty in the procuring and publishing of news and information.

3.2 Publications shall not obtain information, photographs or other material through misrepresentation or subterfuge, unless justified by the public interest.

3.3 Journalists and photographers must not obtain, or seek to obtain, information and photographs through harassment, unless their actions are justified in the public interest.

Principle 4 - Respect for Rights

Everyone has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his/her good name. Newspapers and periodicals shall not knowingly publish matter based on malicious misrepresentation or unfounded accusations. Publications must take reasonable care in checking facts before publication.

Principle 5 - Privacy

5.1 Privacy is a human right, protected as a personal right in the Irish Constitution a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hich is incorporated into Irish law. The private and family life, home and correspondence of everyone must be respected.

5.2 Readers are entitled to have news and comment presented with respect for the privacy and sensibilities of individuals. However, the right to privacy should not prevent publication of matters of public record or in the public interest.

5.3 Sympathy and discretion must be shown at all times in seeking information in situations of personal grief or shock. In publishing such information, the feelings of grieving famil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is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restricting the right to report judicial proceedings.

5.4 Public persons are entitled to privacy. However, where a person holds public office, deals with public affairs, follows a public career, or has sought or obtained publicity for his activities, publication of relevant details of his private life and circumstances

do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해당 주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2.2 독자는 간행물의 내용이 편집자와 기자의 판단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면의 이해관계에 부적절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자는 향후 생길 수 있는 갈등 관계에 대해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원칙 - 공정성과 정직성

3.1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뉴스와 정보를 입수, 기사화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정직성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3.2 언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위진술 또는 속임수를 써서 정보, 사진 등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

3.3 저널리스트와 포토그래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재원을 괴롭혀서 정보나 사진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제4원칙 - 권리의 존중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보호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다.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고의로 거짓말하거나 근거 없는 비난에 바탕한 사안을 고의로 기사화하면 안 된다. 보도 이전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원칙 - 사생활

5.1 프라이버시는 아일랜드 헌법과 유럽 인권협약에서 개인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모든 개인의 삶이나 가족생활, 개인의 통신 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

5.2 뉴스는 개인의 감정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은 공문서 또는 공공의 관심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3 취재원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쇼크를 받은 상황에서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항상 연민과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보도할 때는 피해 가족의 감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정보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5.4 공인은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공인의 공직과 관련한 일이거나 공공의 관심사와 관련되었을 때, 관련된 사생활과 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해당 공인의 행동의 합법성, 공식 발언의 신뢰도, 공식적으로 표명한 입장에 대한

정보이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정보라면 이를 보도하는 것이 용인된다.

5.5 사적 영역에서 개인을 촬영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나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원칙 - 취재원 보호

언론인은 민감한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한다.

제7원칙 - 법정보도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법정보도를 할 때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보도하면 안되며, 무죄일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제8원칙 - 증오의 야기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인종, 종교, 국적, 피부색, 민족, 공동체, 성별, 성적 기호, 결혼 여부, 장애유무, 질병, 나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거나 중대한 범죄가 야기될 수 있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원칙 - 어린이

9.1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1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정보나 발언을 보도하고자 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2 기자와 편집인은 미성년자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미성년자를 취재할 때는 어린이의 나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취재 동의 여부, 주제의 심각성 여부, 공공의 관심사가 되는 사안인가를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은 학교 수업시간에 불필요하게 취재를 강요받을 수 없다. 부모나 보호자의 명성, 평판, 지위가 어린이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제10원칙 - 언론옴부즈맨 결정의 게재

10.1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언론옴부즈맨이나 신문평의회에서 신청인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도해야 한다.

10.2 이 요강의 내용은 정기적으로 검토되도록 한다.

may be justifiable where the information revealed relates to the validity of the person's conduct, the credibility of his public statements, the value of his publicly expressed views or is otherwise in the public interest.

5.5 Taking photographs of individuals in private places without their consent is not acceptable, unless justified by the public interest.

Principle 6 - Protection of Source

Journalists shall protect confidential sources of information.

Principle 7 - Court Reporting

Newspapers and periodicals shall strive to ensure that court reports (including the use of photographs) are fair and accurate, are not prejudicial to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that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s respected.

Principle 8 - Incitement to Hatred

Newspapers and periodicals shall not publish material intended or likely to cause grave offence or stir up hatred against an individual or group on the basis of their race, religion, nationality, colour, ethnic origin, membership of the travelling community, gender, sexual orientation, marital status, disability, illness, or age.

Principle 9 - Children

9.1 Newspapers and periodicals shall take particular care in seeking and presenting information or comment about a child under the age of 16.

9.2 Journalists and editors should have regard for the vulnerability of children and in all dealings with children should bear in mind the age of the child, whether parental or other adult consent has been obtained for such dealings, the sensitivity of the subject-matter, and what circumstances if any make the story one of public interest. Young people should be free to complete their time at school without unnecessary intrusion. The fame, notoriety or position of a parent or guardian must not be used as sole justification for publishing details of a child's private life.

Principle 10 - Publication of the Decision of the Press Ombudsman

10.1 When requested or required by the Press Ombudsman and/or the Press Council to do so, newspapers and periodicals shall publish the decision in relation to a complaint with due prominence.

10.2 The content of this Code will be reviewed at regular intervals.

CODE OF ETHICS OF THE NORWEGIAN PRESS

노르웨이 언론 윤리강령

Ethical Code of Practice for the Press (printed press, radio, television and net publications). Adopted by the Norwegian Press Association November 23th, 2007.

2007년 11월 23일 노르웨이 언론협회가 채택한 언론(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 온라인매체) 윤리강령

Each editor and editorial staff member is required to be familiar with these ethical standards of the press, and to base their practice on this code. The ethical practice comprehends the complete journalistic process from research to publication.

편집자는 이 윤리강령을 숙지, 준수해야 한다. 이 강령은 취재에서 발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1. The Role of the Press in Society

1. 언론의 사회적 역할

1.1.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Information and Freedom of the Press are basic elements of a democracy. A free, independent press is among the most important institutions in a democratic society.

1.1. 표현의 자유, 정보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이다. 자유롭게 독립적인 언론은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다.

1.2. The press has important functions in that it carries information, debates and critical comments on current affairs. The press is particularly responsible for allowing different views to be expressed.

1.2. 언론은 최근 이슈에 대한 정보 및 논쟁거리, 비판적 의견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론은 특히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책무가 있다.

1.3. The press shall protect the freedom of speech,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principle of access to official documents. It cannot yield to any pressure from anybody who might want to prevent open debates,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free access to sources. Agreements concerning exclusive event reporting shall not preclude independent news reporting.

1.3. 언론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공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해야 한다. 언론은 자유로운 토론과 정보의 유통, 취재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방해하는 외부압력을 거부해야 한다.

1.4. It is the right of the press to carry information on what goes on in society and to uncover and disclose matters, which ought to be subjected to criticism. It is a press obligation to shed critical light on how media themselves exercise their role.

1.4. 언론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판을 하기 위한 쟁점을 찾아내 표출할 수 있다. 미디어가 스스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언론의 책무다.

1.5. It is the task of the press to protect individuals and groups against injustices or neglect, committed by public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private concerns, or others.

1.5. 언론은 정치권력과 기관이 행하는 불의에 맞서는 개인, 단체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2. Integrity and Responsibility

2. 정직성과 책임성

2.1. The legally responsible editor carries personal and full responsibility for the material contained in the publication, no matter the form.

2.1. 편집자는 매체에 실린 기사에 대해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

2.2. Each editorial desk and each employee must guard their own integrity and credibility in order to be free to act independently of any persons or groups who - for ideological, economic or other reasons - might want to exercise an influence over editorial matters.

2.2. 편집자는 이념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에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행동하여 언론 본연의 신뢰성을 사수하여야 한다.

2.3. 편집에 관련된 자는 금전이나 호의, 경제적 지원, 자신의 기사와 관련하여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은 거절하여야 한다. 편집에 관련된 자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공정해야 한다.

2.4. 편집인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2.5. 편집인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기사작성 행위 등을 강요 받아서는 안 된다.

2.6. 광고와 기사는 명백히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기사의 형태를 모방하는 광고는 기사의 품위를 손상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해치므로 삼지 말아야 한다.

2.7. 광고를 실어주는 대가로 기사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 기사는 신중한 편집의 결과물이다. 저널리즘과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은 웹링크 등의 연결 여부에 따라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2.8. 광고주가 기사취재 활동 및 기사내용, 표현에 개입하면 올바른 언론활동이 저해된다.

2.9. 언론인은 해당 데스크 외에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아야 한다.

3. 취재행위 및 취재원과의 관계

3.1. 취재원은 밝히는 것이 원칙이나, 취재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나 제3자와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취재원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주어진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취재원을 다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익명의 취재원이나 단독보도라면 특히 취재원에 대해 엄중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익명의 취재원으로부터의 제보, 단독 제보, 금전적 대가를 치른 취재원의 정보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3.3. 인터뷰 진행 조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하도록 한다. 이것은 또한 관련 취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3. Members of the editorial staff must not accept commissions or offices, financial support or dual roles creating conflicts of interest in relation to their editorial tasks. Be open on matters that could influence the credibility of editorial staff members.

2.4. Members of the editorial staff should not use their position to achieve personal gains.

2.5. A member of the editorial staff cannot be ordered to write or do anything, which is contrary to his or her convictions.

2.6. Reject any attempt to break down the clear distinction between advertisements and editorial copy. Advertisements intended to imitate or exploit an editorial product, should be turned down, as should advertisements undermining trust in the editorial integrity and the independence of the press.

2.7. Never promise editorial favours in return for advertisements. The material is published as a result of editorial considerations. See to it that the vital distinction between journalism and commercial communication is being maintained upon employment of web links and other connective means.

2.8. It is a breach of good press conduct to let sponsorship affect editorial activity, contents and presentation.

2.9. Members of the editorial staff may not accept assignments from anyone but the heads of the editorial staff.

3. Journalistic Conduct and Relations with the Sources

3.1. The source of information must, as a rule, be identified, unless this conflicts with source protection or consideration for a third party.

3.2. Be critical in the choice of sources, and make sure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s correct. It is good press practice to aim for diversity and relevance in the choice of sources. If anonymous sources are used, or the publication is offered exclusivity, especially stringent requirements must be imposed on the critical evaluation of the sources. Particular caution should be exercised when dealing with information from anonymous sources, information from sources offering exclusivity, and information provided from sources in return for payment.

3.3. Good press conduct requires clarification of the terms on which an interview is being carried out. This also pertains to adjacent research.

3.4. Protect the sources of the press. The protection of sources is a basic principle in a free society and is a prerequisite for the ability of the press to fulfil its duties towards society and ensure the access to essential information.

3.5. Do not divulge the name of a person who has provided information on a confidential basis, unless consent has been explicitly given by the person concerned.

3.6. In consideration of the sources and the independence of the press, unpublished material as a main rule should not be divulged to third parties.

3.7. It is the duty of the press to report the intended meaning in quotes from an interview. Direct quotes must be accurate.

3.8. Changes of a given statement should be limited to corrections of factual errors. No one without editorial authority may intervene in the editing or presentation of editorial material

3.9. Proceed tactfully in journalistic research. In particular show consideration for people who cannot be expected to be aware of the effect that their statements may have. Never abuse the emotions or feeling of other people, their ignorance or their lack of judgment. Remember that people in shock or grief are more vulnerable than others.

3.10. Hidden cameras/microphones or false identity may only be used under special circumstances. The condition must be that such a method is the only possible way to uncover cases of essential importance to society.

3.11. The press shall as a rule not pay sources or interviewees for information. Exercise moderation when paying a consideration for news tips. It is incompatible with good press practice to employ payment schemes designed to tempt people, without due cause, to invade the privacy of others or to disclose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4. Publication Rules

4.1. Make a point of fairness and thoughtfulness in contents and presentation.

4.2. Make plain what is factual information and what is comment.

4.3. Always respect a person's character and identity, privacy, race, nationality and belief. Never draw attention to personal or private aspects if they are irrelevant.

3.4. 취재원을 보호해야 한다. 취재원의 보호는 자유사회의 기본적 요소이며, 언론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3.5. 명시적으로 신원을 밝혀도 좋다고 취재원과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의 이름을 밝혀서는 안 된다.

3.6. 취재원과 언론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보도되지 않은 취재물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3.7. 인터뷰 발언은 그 발언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도해야 한다. 직접 인용은 정확해야 한다.

3.8. 인터뷰 내용은 명백한 오류를 제외하고는 수정해서는 안 된다. 편집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사의 편집이나 작성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3.9. 취재활동에는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자신의 진술이 가지는 영향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 타인의 감정과 느낌, 무지, 판단착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충격, 비탄에 빠진 사람들은 더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3.10. 몰래카메라·마이크·신분위장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즉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하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일 경우에 한한다.

3.11. 언론은 취재원이나 인터뷰 대상에게 정보를 대가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뉴스제공에 대한 보수는 적정해야 한다. 특히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알아내거나 민감한 개인의 정보를 노출시키기 위한 의도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

4. 편집원칙

4.1. 기사의 내용과 형식은 공정성과 신중함을 담보해야 한다.

4.2. 사실과 의견은 명확히 구분하도록 한다.

4.3. 언론인은 항상 개인의 신원과 프라이버시, 인종, 국적, 믿음을 존중해야 한다. 직접적 관계가 없는 개인 정보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4.4. 제목과 서두는 기사의 전체 맥락을 함축해야 한다. 다른 언론에서 인용했을 때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 좋다.

4.5. 범죄 혐의와 판결에 대해 단정하면 안 된다. 판결의 효력이 있기 전까지는 용의자가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앞서 보도했던 사건의 최종 법원 판결이 이뤄지면 그 결과를 보도해주는 것이 좋다.

4.6. 범죄, 사고보도를 할 때는 항상 희생자와 친족들이 받을 영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희생자나 행방불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는 근처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슬픔과 충격에 빠진 사람들을 항상 배려하도록 한다.

4.7. 이론의 여지가 있거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기사에서는 이름과 사진 등의 게재에 주의해야 한다. 아직 취재의 초기단계에 있는 사건이거나 알려짐으로써 제3자에게 부담한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있는 미성년범에 대한 기사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신원공개는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심각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경우 무방비상태의 개인에게 갑작스런 폭력의 위험성이 있을 때 만약 대상자의 신원이나 사회적 지위가 보도와 관련이 있거나 신원 공개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부당한 의심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면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할 수도 있다.

4.8. 미성년자에 대해 보도할 때는 언론보도가 불러올 수 있는 파장에 대해 먼저 고려해야 한다. 보호자나 부모가 공개에 동의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가정사이거나 또는 어린이 보호 당국이나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원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4.9. 자살, 또는 자살미수에 대한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국민이 꼭 알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되도록 보도하지 않도록 한다. 모방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자살방법 등에 대한 묘사는 피하도록 한다.

4.10. 사진을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11. 보도사진은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 사용된 사진은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조작사진은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는 등 사진을 변형하고 하는 의도

4.4. Make sure that headlines, introductions and leads do not go beyond what is being related in the text. It is considered good press conduct to reveal your source when the information is quoted from other media.

4.5. In particular avoid presumption of guilt in crime and court reporting. Make it evident that the question of guilt, whether relating to somebody under suspicion, reported, accused or charged, has not been decided until the sentence has legal efficacy. It is a part of good press conduct to report the final result of court proceedings, which have been reported earlier.

4.6. Always consider how reports on accidents and crime may affect the victims and next-of-kin. Do not identify victims or missing persons unless next-of-kin have been informed. Show consideration towards people in grief or at times of shock.

4.7. Be cautious in the use of names and photographs and other clear identifiers of persons in referring to contentious or punishable matters. Special caution should be exercised when reporting cases at the early stage of investigation, cases concerning young offenders and cases in which an identifying report may place an unreasonable burden on a third party. Identification must be founded on a legitimate need for information. It may, for instance, be legitimate to identify someone where there is imminent danger of assault on defenceless individuals, in the case of serious and repeated crimes, if the identity or social position of the subject is patently relevant to the case being reported on, or where identification protects the innocent from exposure to unjustified suspicion.

4.8. Reporting on children, it is considered good press conduct to assess the implications that media focusing could cause in each case. This also pertains when the person in charge or parent, has agreed to exposure. As a general rule the identity of children should not be disclosed in reports on family disputes or cases under consideration by the childcare authorities or by the courts.

4.9. Be cautious when reporting on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Avoid reporting that is not necessary for meeting a general need for information. Avoid description of methods or other matters that may contribute to provoking further suicidal actions.

4.10. Exercise caution when using photos in any other context than the original.

4.11. Protect the credibility of the journalistic photograph. Photos used as documentation must not be altered in a way that creates a false impression. Manipulated photos can only be accepted as

illustrations if it is evident that it in actual fact is a picture collage.

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4.12. The use of pictures must comply with the same requirements of caution as for a written or oral presentation.

4.12. 사진을 사용할 때는 글, 또는 구술로 작성된 기사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13. Incorrect information must be corrected and, when called for, an apology given, as soon as possible.

4.13. 부정확한 기사는 정정해야 하며, 요청이 있었을 때는 최대한 사과를 하도록 한다.

4.14. Those who have been subjected to strong accusations shall, if possible, have the opportunity to simultaneous reply as regards factual information. Debates, criticism and dissemination of news must not be hampered by parties being unwilling to make comments or take part in the debate.

4.14. 유력한 용의자의 경우에도 반론에 대한 기회가 즉각 부여되어야 한다. 토론과 비판, 뉴스의 전파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거나 또는 해당 쟁점에 관련된 자들의 방해가 받아서는 안 된다.

4.15. Those who have been the subject of an attack shall have the chance to reply at the earliest opportunity, unless the attack and criticism are part of a running exchange of views. Any reply should be of reasonable length, be pertinent to the matter and seemly in its form. The reply can be refused if the party in question has rejected, without an objective reason, an offer of presenting a contemporaneous rejoinder on the same issue. Replies and contributions to the debate should not be accompanied by polemic editorial comment.

4.15. 기사의 주된 비판대상이 된 자는 최대한 반론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 반론은 상식적인 수준의 길이로, 해당 이슈와 관련되고 적당한 형태이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명백한 이유 없이 그 이슈에 대한 답변을 회피할 경우에는 반론을 실지 않아도 무방하다. 반론에 그에 대한 비판적 코멘트를 달아서는 안 된다.

4.16. Beware that digital publication pointers and links could bring you to other electronic media that do not comply with the Ethical Code. See to it that links to other media or publications are clearly marked. It is considered good press conduct to inform the users of interactive services on how the publication registers you, and possibly exploits your use of the services.

4.16. 인터넷 기사의 포인터나 링크로 인해 이 윤리강령에 반하는 다른 매체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다른 미디어나 언론에 링크되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좋다.

4.17. Should the editorial staff choose not to pre-edit digital chatting, this has to be announced in a clear manner for those accessing the pages. The editorial staff has a particular responsibility, instantly to remove inserts that are not in compliance with the Ethical Code.

4.17. 편집인이 기사의 댓글을 미리 편집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방침을 이용자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편집인은 특히 윤리강령에 부합하지 않는 댓글을 즉시 삭제할 수 있다.

번역 : 조사팀 이 정 희 조사관